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20
----------	-----------

제안연월일 : 2022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안전공제기금의 관리 주체는 학교안전공제회이며 기금관리주체의 장은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인바, 동 기금운용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동 기금의 실질적 집행주체인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규정함.
- “공무원위원” 과 “민간위원” 을 각각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통일성을 도모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을 “위촉직 위원” 으로 함(안 제6조제2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체화함(안 제6조제3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규정함(안 제6조제4항).
- “공무원위원” 과 “민간위원” 을 각각 “당연직 위원” 과 “위촉직 위원” 으로 함(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 안 제7조를 수정함에 따라 경과조치에 수정 사항을 반영함(안 부칙 제 2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제2항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장 및”을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고,”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7조제2항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민간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민간위원의”를 “위원의”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민간위원에”를 “위원에”로, “제6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을 “제6조와 제7조”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u><신 설></u></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구성 등)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공 무원이 아닌 민간위원</u> 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p> <p>③ <u>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 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 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 촉한다.</u></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 설치·구성 등) ① (개 정안과 같음)</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 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u>위 촉직 위원</u>이 전체 위원 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 록 한다.</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1. <u>당연직 위원</u> : 서울특 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u>교육행정국 장, 예산담당관</u></p> <p>2. <u>위촉직 위원</u> : 「지 방공무원법」 제31조 에서 <u>정한 결격사유 가 없고 다음 각 목 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u></p> <p>가. <u>서울특별시의회 의원</u> 나. <u>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 력이 있는 전문가</u></p>

<p>제6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p>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생략)</p> <p>제7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민간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p> <p>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⑤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임무 및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생략)</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p>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
해서는 제6조제2항과
같은 조 제4항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
는 제6조와 제7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 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으로, “운영 등에 관한”을 “관리·운용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 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

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의 제목“(기능)”을“(기금의 관리·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업

③ 학교안전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제2항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촉위원은”을 “위촉직 위원은”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교육청</p> <p><u>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u> <u>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u> <u>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 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학교안전공제및사고 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 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 라 설치·구성된 기금을 말한다.</p> <p>제3조(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 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p>	<p>서울특별시교육청</p> <p><u>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u> <u>및 운용 조례</u></p> <p>제1조(목적) ----- 「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 제및사고예방기금 ----- -- 관리·운영에 필요한 ----- -----.</p> <p>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 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 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 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 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 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성과 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1. 공제급여의 지급
2.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 지원 사업
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신 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업

③ 학교안전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구성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행정국장, 예산담당관

2. 위촉직 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 제11조 (생략)

<신설>

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

-----.

제8조 ~ 제12조 (현행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